G - 35 - 2012

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연수에 관한 지침

2012. 5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대한기계학회 서상호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8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Managing health and safety on work experience a guide for organisers, HSE, 2000
-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2006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5월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35 - 2012

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연수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신규채용 근로자의 연수와 관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인턴직원 및 신입직원의 채용 시 교육(연수)을 위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.

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업무 연수 담당자 등의 책무

- (1) 업무 연수 담당자의 책무
 - (가) 업무 연수 담당자는 연수 업무 수행 중의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담당한다. 담당자는 업무 연수에 따른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예 방하고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위험성 평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 - (나) 업무 연수 담당자는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보하여야 하며,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연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G - 35 - 2012

(다) 업무 연수 담당자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중대한 유해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업무 연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연수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강사들의 안전보건확보에도 유념하여야 한다.

(2) 사업주의 책무

- (가)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은 물론 복지에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.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연수 시 노출되는 유해위험요소를 평가하고, 그것을 제거 혹은 관리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특히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나)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의학적, 신체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연수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연수 시 처하게 될 위험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다)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 관련 외국어 교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신규채용 근로자의 책무

신규채용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향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해야 하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하고, 업무 연수 시 에는 업무 연수 담당자의 적절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5. 업무 연수 시 유의사항

- (1) 연소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 업무 연수 시 연소자에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는 안 된다.
- (2) 노동시간

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며 잔업이나 특근 등은 사업주 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.

G - 35 - 2012

(3) 업무 배치

사업주와 업무 연수 담당자는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복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또한 이를 수시로 점검하 여 적합한 업무에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.

6. 업무 연수 시 유해위험요소 대응 절차

- (1)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업무 연수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고 기록한다.
- (2) 업무 연수 담당자와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소의 제 거 혹은 경감을 위한 적절한 단계별 조치를 실행하여야 하며, 신규채용 근 로자나 그 보호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3) 신규채용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담당할 직원을 지명하여 적절한 감독을 하도록 하며,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경험하게 될 업무의 성격을 정의하고 계획하게 한다. 학습장에 등이 있는 직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.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응급 시 대처 방안과 보험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.
- (4)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연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5) 안전보건 및 복지를 위한 연수 장소의 환경 점검사항 확인을 위해 정리정 돈상태, 조도, 좌석, 기계·기구 방호조치, 화재예방, 전기 배선, 화장실 및 위생시설, 개인 보호구, 안전보건표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.
- (6) 초기 위험성 평가 시 제기 되었던 문제의 개선여부 확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요구사항 개선과 지속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 다. 또한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지식 등을 공유해야 한다.

G - 35 - 2012

7. 업무 연수의 효과제고를 위한 사전준비사항

업무 연수에 참여하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은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.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연수에 따른 유해위험요소를 설 명함으로써 이들이 연수 전에 필요한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통제를 이해 하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